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어 촌 · 어 항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개발에 경험과 역량 있는 민간 조직이 어촌·어항재생사업에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협동조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를 추가(안 제42조의8)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6.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민관협력을 위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이 경우,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시·도 의회 또는 시·군·구 의회에 해당 민관협력 범위, 협력 대상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8(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2조의8(어촌·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사업계획수립권자가 어촌·어 항재생사업의 민관협력을 위 하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이 경우, 사 업계획수립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 우 시·도 의회 또는 시·군·구 의회에 해당 민관협력 범위, 협력 대상 등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연 락 처	(044) 200 - 6171